

## 즉시 항고

사건: 2006초기3061 [조귀장 기피 신청](#)

항고인: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

위 조귀장 법관 기피 신청기각 결정에(이하 ‘이사건’, 2006. 10. 20. 통지 수령) 대하여,

[형사소송법 제23조 \(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\)](#)

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따라,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.

### 즉시항고 취지

“2006. 10. 17 자 조귀장 법관기피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.”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# 즉시항고 사유

1. 항고인(신청인)의 조귀장 법관 기피사유는,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는 조귀장으로 부터,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는 반면, 이강원 판사는 이러한 항고인의 기피사유를 허위로 작성함으로 써, 그릇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.
2. 아래 비교표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, 이강원 판사는 조귀장 판사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항고인의 기피사유를 **변조 작성**하고([형법 제 227조](#) 위반) 그 변조된 기피사유에 대하여 판단함으로 써, 결정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.

2006년 10월 21일

위 항고인 김명호 (날인 또는 서명)

서울중앙지법 항소 1부 귀중

기피사유에 대한 항고인과 이강원 판사의 허위 주장 비교표

항고인(신청인)의 기피 사유	이강원 판사의 허위 날조 사유
<p>1. 조귀장 판사가 위반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</p> <p><u>형사소송규칙 제132조(증거신청의 방식)</u></p> <p>①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<u>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(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)</u></p> <p>①형사소송법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 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<b>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</b>하여야 한다.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p> <p><u>법원실무제요 제 5장 공판절차(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)</u></p> <p>“검사로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도 분명히 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(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)”</p> <p><u>형사소송규칙 제133조 (증거신청의 순서)</u></p> <p>“증거신청은 <b>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</b>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.”</p> <p>2. 위 법 조항과 규칙에 의하여, 검사측에 자료제출 및 그의 입증취지에 대한 제출 명령을 하지 않음으로써, 재판지연</p>	<p>검사의 증거서류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로 하여금 그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게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그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,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.</p>